

농촌지역 공공부조사업의 차별성 반영에 관한 연구

김 인*

우리나라 공공부조사업은 도시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를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조사업을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과 비교평가를 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문제점을 사회복지 구조적 측면과 사회사업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농촌지역의 효과적인 공공부조사업을 위하여 도시지역과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보호대상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하여 농촌지역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생활양태를 비교 평가하였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6가지 주요한 공공부조사업의 내용에 관련된 요인들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5개 시 15개 동에서 143케이스, 5개 군 15개 면에서 136케이스, 총 279케이스를 조사하였다.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조사업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빈곤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자조자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빈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빈곤이라는 문제는 그 개념정의에서부터 절대적 빈곤(Rowntree, 1901: 86), 상대적 빈곤(Townsend, 1975: 268~269), 문화적 빈곤(Sullivan et al., 1980: 379)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빈곤에 대한 원인접근도 낙인이론, 기능이론, 갈등이론 등 상이한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김영모, 1992: 7~10).

각 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조제도를 두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이들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조사업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서비스전달상의 행정적 편의는 있을 수 있으나 공공부조사업의 근본 목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의 조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농촌지역에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보호대상자들과 빈곤하게 된 원인과 기간, 직업, 거주지 이동, 가족해체,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수집 경로 등 이들의 생활양태 및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때 질병의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치와 처방을 하듯이 공공부조사업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서비스대상자들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차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Romanayshyn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전략이론¹⁾에서 적합한 사회적 급부의 제공을 통한 사회보장과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있고(Romanayshyn, 1971: 5~10), Pincus와 Minahan²⁾도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한 사회사업실무가치의 극대화를 주요한 사회사업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Pincus & Minahan, 1973: 15~19).

Titmuss는 빈곤을 소득의 부족으로만 정의할 수 없고 사회에서 자원의 불공평한 배분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Titmuss, 1965: 130~133). 또한 Elkin은 효과성이란 전통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수혜자나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자원의 적합성과,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욕구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가와 같은 욕구의 적합성 등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Elkin, 1985: 12~13).

빈곤은 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나 경제적 기회가 갖는 한계와 개인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복잡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Coulton과 Chow는 빈곤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원방법, 프로그램, 복지사업의 유형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Coulton & Chow, 1995: 2113~2115).

이들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이 적절한 자원배분과 대상자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서비스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농촌지역 공공부조사업을 이들의 이론에 적용해 보면 지역의 생활양태나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욕구, 만족도 등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현재의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 농촌지역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사회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1) Romanayshyn은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① 사회적 급부 ② 개인적 서비스 ③ 사회행동 등의 전략을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 Pincus와 Minahan은 사회사업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문제해결능력 제고, ② 자원체계와의 연결수립, ③ 자원체계와의 상호작용촉진,
④ 자원체계내의 상호작용촉진, ⑤ 사회정책에의 영향, ⑥ 자원의 효과적 배분,
⑦ 사회통제의 매개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예산을 사회적 급부의 적합성과 자원활용의 극대화에 부응한 최적화방향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농촌지역의 공공부조사업은 부족하게 배분된 자원마저 유용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공공부조사업이 농촌지역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자원체계의 운영방법이 농촌지역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알맞게 수정되거나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서비스의 급여내용을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지역의 공공부조서비스의 주요한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양태, 공공부조사업의 서비스내용 등을 비교 평가하여, 농촌지역의 차별성이 반영된 특성화된 공공부조사업의 체계를 구축하는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선행연구 논의

1) 농촌빈곤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빈곤에 대한 조사는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도 실시하였고 해방 후에도 피난민과 이재민에 관한 행정조사가 있었으며 또한 많은 학자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연구를 행하였다. 우리나라 빈민은 주로 귀향동포, 월남동포, 피난민, 수재민으로 대변되었으나, 1960~1970년대 이후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노동자가 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빈민촌을 형성하여, 이러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농촌지역의 선행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연구된 농촌빈곤 연구들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의 빈곤자들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농촌빈곤의 원인을 경제활동기회, 교육기회, 의료혜택, 문화수준 등 빈곤 가구의 특성과 경제적 수단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영세빈농 자체가 빈곤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여 개인적, 사회적 원인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다.

농촌빈곤의 연구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먼저 김일철·정영일은 영세소농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파악하고 경제적 빈곤, 사회적 빈곤, 심리적 빈곤 등 빈곤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정영일·김일철, 1977: 25~27). 이은진은 농촌빈곤을 첫째 소득을 포함한 생계수단의 결핍, 둘째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열악성, 셋째 일상생활에 대한 처리능력의 결여, 넷째 사회적 범주로서의 빈곤 등 네 가지로 구별하여 논하고 있다(이은진, 1981: 34~37).

김재홍은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빈곤 등의 실태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에는 특별한 교육비 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위주로 하는 복지제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재홍, 1988: 23~26). 정명채 등은 농촌지역 영세농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촌지역 빈곤자는 교육수준이 낮아 빈곤해지며 경제적 빈곤은 심리적 빈곤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세대간의 빈곤이 세습되는 빈곤자는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자조·자립할 수 있는 능력개발제도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빈곤의 종합적인 구조개선 및 지역개발정책 등 농어촌 종합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정명채 외, 1989: 56~57).

정기환은 농촌빈곤가구의 특성을 경지규모가 작고 부양가족은 많으나 생산적 노동력이 적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점을 들고 있다. 농촌빈곤의 해결을 위하여 그는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취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차원의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필도는 농촌 빈곤선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이필도, 1993), 권영학은 빈곤선 설정을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에 대한 시도를 하였으며(권영학, 1991), 윤종대는 농촌과 도시의 빈곤의 원인과 이에 따른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윤종대, 1992).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농촌빈곤의 선행연구들이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분석적인 면에서 현황파악 등의 탐색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공부조사업의 선행연구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연구는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공공부조사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상자선정, 전달체계, 서비스전달자 등의 범주로 나뉘어 연구되었는데, 각 영역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김미곤은 현행의 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한 연구가 급여, 전달체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생계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산기준이 동일하게 간주되고 있으며 가구규모별 1인당 생계비는 1인 가구가 가장 높고 가구규모가 커지면서 생계비보조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김미곤, 1998: 66). 박찬용은 김미곤과는 다르게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거비용을 제외한 생활필수품의 경우 추정된 지역간 물가차이는 예상보다 크지 않으나 재산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본 결과 도시와 군 지역 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므로 만일이 주거비용의 차이를 선정기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농어촌지역에서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많은 가구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들은 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행의 선정기준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박찬용, 1997: 3~24). 민경삼은 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행정적 기준이며 그 기준 항목이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 금액도 과학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도 없이 전년도 답습의 행정관례에 따라 경정(更正)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민경삼, 1996: 137~138). 그가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조사책정의 방안으로는 먼저 보호대상자 조사책정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소득기준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재산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척도로 엄격히 행해져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보호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달체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보건복지사무소’가 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는 1995년부터 보건복지사무소가 서울 관악

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안산시, 전라북도 완주군, 강원도 홍천군 등 전국적으로 5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평가자료가 나오고 있다(이성기 외, 1995: 101~199).

보건복지사무소는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확대되어 관련제도간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보건소의 기능이 기존의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사업에서 노인보건, 정신보건, 가정방문보건사업 등의 복지분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분야와의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대상자에게 일방적, 수직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하여, 빈곤자에게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보건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취약계층의 자립 및 자활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며, 우선 복지부분에서 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상호 업무연계를 통한 업무 상승효과가 발견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의 접근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IMF 이후에 정부의 기구조정과 맞물려 이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익균은 공공부조사업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으며(김익균, 1995), 정덕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요소인 조직, 기능, 인력 및 재정을 중심으로 공공사회복지부분과 연계하여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방안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간의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을 총괄하기 위한 사회복지청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정덕규, 1997: 301).

공공부조제도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먼저 남세진과 조홍식은 농촌지역의 전달자들이 도시지역의 전달자보다 비전문가들이 선정업무를 하고 있다고 조사하고 있으며(남세진·조홍식, 1994: 84~88), 박경숙은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복지전문요원간의 책임성, 효과성, 업무성 만족의 격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박경숙, 1995: 69~96). 김현숙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실태를 조

사하였다(김현숙, 1990: 301). 이용교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사회담당공무원의 전문적 자질과 의식, 직무개선방안들에 대한 비교조사를 하였으며(이용교, 1990: 177~193), 윤혜미와 김근식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반적 특성, 직무수행실태, 전문적 대인서비스에 대한 태도,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 직무만족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윤혜미·김근식, 1991).

전국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동호회에서는 자신들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보호대상자들에게 단순한 물질적 급여의 제공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증원이 필요하며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및 업무추진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요원들의 사기앙양과 장기적인 복지행정체계구축을 위한 과감한 정부의 발상에 대한 전환과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강혜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직무분담이 불투명하며 공식적인 위계질서가 없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계량화해서 측정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어려워서 이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효과가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강혜규, 1997: 69~75).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보호대상자의 선정상의 문제점이나 전달체계 및 전달자의 전달실태나 개선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농촌지역을 기초로 한 지역적인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다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차별성'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농촌지역의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빈약하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심화적 연구의 의미보다는, 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공공부조사업이 급여내용 면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차별성을 반영하여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하여 알아보고, 구체적인 농촌지역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차별적 시행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조사 방법

1) 조사도구 및 조사대상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문제의 비교 및 검증을 위한 개념들을 조작화하여 크게 3부문으로 나누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일반적 문항으로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양태에 관련된 것은 21문항,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공공부조사업의 대상자들이 비교적 많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이 조사연구에서 시설보호대상자는 시설수용의 환경으로 공공부조사업의 목적인 자활의 취지보다는 보충적 지원사업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 조사의 표본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행정구역상 시(市) 단위의 동(洞)과 군(郡) 단위의 면(面)으로 설정하였다. 도시지역으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 전라북도의 5개 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농촌지역으로는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등 5개 군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도시지역인 시 단위에서는 각각 3개 동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농촌지역인 군 단위에서는 각각 3개 면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각각 5년 이상 거주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세대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케이스는 도시지역은 1개 시 1개 동에 10케이스씩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5개 시 15개 동 150케이스를 조사하였고 농촌지역은 1개 면에 10케이스씩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5개 군 15개 면 150케이스를 조사하여 총 300케이스를 조사하였다.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의 비율은 7 : 3으로 자활보호대상자 90케이스, 거택보호대상자 210케이스씩 조사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보호대상자의 현황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2) 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조사절차는 먼저 자료수집도구인 구조화된 설문지의 내용이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에 부합되는가와 연구과정과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10명, 농촌지역 10명의 대상자에게 pre-test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과정은 설문지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현장에서 공공부조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씩에게 자문을 구하고 1차 조사를 하였다.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에 응답하기 쉽게 설문지를 재구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5개 시와 5개 군의 책임자 10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1차적으로 만나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이 각 동과 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여 이들이 직접 10명씩의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총 3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직접참여 하였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어려움 점은 없었으며, 회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수립된 자료의 부호화 작업과 수정작업을 거쳐 SPSS/PC +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단순빈도분석, 교차분석(Chi-Square), t-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보호대상자 생활양태와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의 구체적인 공공부조사업내용 등에 지역적인 요인에 대한 차이는 교차분석(Chi-Square)으로 그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의 6가지 주요한 공공부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간의 유의미한 차이 등을 t-test로 분석하였다.

4. 조사결과 분석 및 고찰

1) 보호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 연령, 보호종류, 교육정도, 종교, 결혼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보호대상자들의 성별을 보면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령을 보면 도시지역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농촌지역은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이 도시지역의 보호대상자들보다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별 보호대상자들의 교육정도는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이 도시지역보다 낮게 구성되어 있는데 무학의 비율(31.9% : 68.1%)이 도시지역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농촌지역의 문맹률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는 도시지역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촌지역에서는 불교가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절반 정도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혼상태는 도시지역의 보호대상자나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이 사별이 양 집단 내에서 각각 44.1%, 5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는 그 비율이 농촌지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별거 및 이혼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도시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의 가족 해체문제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보호대상자 생활양태 분석

(1) 거주지 이동

<표 2>는 거주지 이동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은 아주 심한 빈도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차분석결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의 이동성이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농촌지역에

서는 대상자들의 이동성이 적은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 보호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 분		도 시		농 촌		합계 N	χ^2	df
		n=143	(%A/%B)	n=136	(%A/%B)			
성 별	남	47	(47.0/32.9)	53	(53.0/39.0)	100	.288	1
	여	96	(53.6/67.1)	83	(46.4/61.0)	179		
연 령	30세 미만	4	(36.4/ 2.8)	7	(63.6/ 5.1)	11	.003**	5
	30세 이상~40세 미만	24	(77.4/16.8)	7	(22.6/ 5.1)	31		
	40세 이상~50세 미만	38	(59.4/26.6)	26	(40.6/19.1)	64		
	50세 이상~60세 미만	30	(50.8/21.0)	29	(49.2/21.3)	59		
	60세 이상~70세 미만	23	(35.4/16.1)	42	(64.6/30.9)	65		
	70세 이상	24	(49.0/16.8)	25	(51.0/18.4)	49		
보호 종류	거택보호	39	(52.7/27.3)	35	(47.3/26.1)	74	.828	1
	자활보호	104	(51.2/72.7)	99	(48.8/73.9)	203		
교육 정도	무 학	30	(31.9/21.0)	64	(68.1/47.1)	94	.000**	3
	초 졸	56	(53.3/39.2)	49	(46.7/36.0)	105		
	중 졸	27	(62.8/18.9)	16	(37.2/11.8)	43		
	고졸 이상	30	(81.1/21.0)	7	(18.9/ 5.1)	37		
종 교	기독교	43	(62.3/30.1)	26	(37.7/19.1)	69	.009**	4
	불 교	22	(44.9/15.4)	27	(55.1/19.9)	49		
	천주교	12	(75.0/ 8.4)	4	(25.0/ 2.9)	16		
	무 교	62	(48.4/43.4)	66	(51.6/48.5)	128		
	기 타	4	(23.5/ 2.8)	13	(76.5/ 9.6)	17		
결혼 상태	배우자 생존	44	(50.6/30.8)	43	(49.4/31.6)	87	.053	3
	별거 및 이혼	29	(70.7/20.3)	12	(29.3/ 8.8)	41		
	사 별	63	(46.3/44.1)	73	(53.7/53.7)	136		
	동거 및 미혼	7	(46.7/ 4.9)	8	(53.3/ 5.9)	15		

주 : A = 행 백분율 (%), B = 열 백분율 (%), ** p < .01

〈표 2〉 거주지 이동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B)	n=136	(%A/%B)			
유 무	있 다	66	(73.3/46.2)	24	(26.7/17.6)	90	25.922**	1
	없 다	77	(40.7/53.8)	112	(59.3/82.4)	189		
횟 수	1 번	15	(53.6/22.7)	13	(46.4/54.2)	28	14.420**	3
	2 번	27	(71.1/40.9)	11	(28.9/45.8)	38		
	3 번	17	(100./25.8)	0	(0/0)	17		
	4번 이상	7	(100./10.6)	0	(0/0)	7		
원 인	직장 얻기 위해	5	(62.5/ 8.2)	3	(37.5/14.3)	8	10.171*	4
	자녀교육	6	(46.2/ 9.8)	7	(53.8/33.3)	13		
	질 병	5	(83.3/ 8.2)	1	(16.7/ 4.8)	6		
	주택문제	43	(84.3/70.5)	8	(15.7/38.1)	51		
	기 타	2	(50.0/ 3.3)	2	(50.0/ 9.5)	4		

주 : A = 행 백분율 (%), B = 열 백분율 (%), * p < .05, ** p < .01.

(2) 가족해체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표 3〉은 가족해체와 관련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나타낸 것으로, 가족해체의 유무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해체의 원인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해체원인의 순위는 같지만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은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에 비하여 배우자 사망이 많고, 반면에 이혼이나 범죄에 의한 가족해체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대상자의 연령층이 높다는 일반적 사항과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범죄 등의 확대되어가는 사회문제에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덜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는 무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유무에 있어서는 도시지역(86.7%)과 농촌지역(86.8%)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무지의 종류 면에서는 양 지역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은 이웃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에 비하여 지리나 이웃사람들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법이나 제도를 모르고, 특별히 한글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

〈표 3〉 가족해체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 %B)	n=136	(%A/ %B)			
유 무	있 다	93 (52.5/65.0)	84 (47.5/61.8)	177	1.372	1	
	없 다	50 (49.0/34.3)	52 (51.0/38.2)	102			
원 인	배우자사망	57 (47.9/61.3)	62 (52.1/73.8)	119	12.967**	3	
	이 혼	21 (65.6/22.6)	11 (34.4/13.1)	32			
	범 죄	14 (77.8/15.1)	4 (22.2/ 4.8)	18			
	기 타	1 (12.5/ 1.1)	7 (87.5/ 8.3)	8			

주 : A=행 백분율 (%), B=열 백분율 (%), ** p < .01

〈표 4〉 무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 %B)	n=136	(%A/ %B)			
유 무	있 다	124 (51.2/86.7)		118 (48.8/86.8)		242	.000	1
	없 다	19 (51.4/13.3)		18 (48.6/13.2)		37		
종 류	법이나 제도	76 (55.1/61.3)		62 (44.9/52.5)		138	23.584**	3
	글을 잘 몰라	24 (32.0/19.4)		51 (68.0/43.2)		75		
	지리를 몰라	7 (77.8/ 5.6)		2 (22.2/ 1.7)		9		
	이웃사람을 잘 몰라	17 (85.0/13.7)		3 (15.0/ 2.5)		20		

주 : A=행 백분율 (%), B=열 백분율 (%), ** p < .01

램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생활양태요인의 비교

〈표 5〉는 거주지 이동횟수, 전문요원과의 상담횟수, 부채정도 등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보호대상자 양 집단간의 평균차이검증을 한 것이다. 그 결과 거주지 이동 횟수는 도시지역이 평균 2.30으로 농촌지역의 1.4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교차분석과 결과가 동일하였다. 이것은 도시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이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에 비하여 이동횟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 이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상담횟수에서는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이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에 비하여 상담횟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5〉 생활양태요인의 평균차이검증 (t-test)

구 분		N	Mean	S. D	t
거주지 이동횟수	도 시	66	2.30	1.07	5.045**
	농 촌	24	1.46	0.51	
전문요원과 상담횟수	도 시	95	3.65	1.37	4.697**
	농 촌	103	2.74	1.36	
부채정도	도 시	85	2.21	1.10	-.039
	농 촌	64	2.22	1.06	

주: ** $p < .01$

도시지역의 평균은 3.65이고 농촌지역은 2.74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의 전문요원들은 도시지역의 전문요원들에 비하여 대상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한 전문요원 1인당 담당하는 케이스가 도시는 127.3케이스, 농촌지역은 285.4케이스로 나타난 것이 작용하여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이 전문요원과 상담하는 횟수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담당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채정도는 거의 동일한 평균치를 보이고 있어 교차분석과 동일한 결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도시나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채를 내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거주지 이동횟수와 전문요원과의 상담횟수에서의 평균차이 검증(t-test)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채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차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3) 공공부조사업 내용의 조사분석

(1) 생계보호사업 내용

〈표 6〉은 생계보호사업에 대한 만족도, 증액필요성, 증액정도를 교차분석시켜 놓은 것이다. 생계보호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

〈표 6〉 생계보호사업 관련내용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 %B)	n=136	(%A/ %B)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7 (100/ 4.9)	0 (0/0)	7	17.700**	4	
	불만족한 편이다	42 (67.7/29.4)	20 (32.3/14.7)	62			
	그저 그렇다	47 (48.0/32.9)	51 (52.0/37.5)	98			
	만족한 편이다	44 (41.9/30.8)	61 (58.1/44.9)	105			
	매우 만족한 편이다	3 (42.9/ 2.1)	4 (57.1/ 2.9)	7			
증 액 필요성	그렇다	120 (60.6/87.6)	78 (39.4/57.8)	198	30.518**	1	
	아니다	17 (23.0/12.4)	57 (77.0/42.2)	74			
증 액 정 도	2만원 이하	0 (0/0)	17 (100./23.0)	17	55.157**	5	
	2~4만원 미만	13 (50.0/10.7)	13 (50.0/17.6)	26			
	4~6만원 미만	22 (45.8/18.2)	26 (54.2/35.1)	48			
	6~8만원 미만	19 (73.1/15.7)	7 (26.9/ 9.5)	26			
	8~10만원 미만	18 (81.8/14.9)	4 (18.2/ 5.4)	22			
	10만원 이상	49 (87.5/40.5)	7 (12.5/ 9.5)	56			

주 : A=행 백분율 (%), B=열 백분율 (%), ** p < .01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들은 집세 등 기본적인 의식주경비가 농촌지역보다 많이 소비됨을 반영한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은 증액의 필요성도 ‘증액해야 한다’가 ‘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는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반증이 되고 있으며 증액의 액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5%나 되고 있어, 이들이 기본적인 생계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만족도에서는 도시지역보다 높고 증액의 필요성도 도시지역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액정도에서도 비교적 낮은 액수의 증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보호사업 내용

〈표 7〉은 교육보호사업 내용에 대한 것으로 자녀의 기대학력, 자녀에게 가장 필요

〈표 7〉 교육보호사업 관련 내용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 %B)	n=136	(%A/ %B)			
기대 학력	고 등 졸	31	(47.7/27.7)	34	(52.3/32.4)	65	5.093	2
	전문대졸	22	(41.5/19.6)	31	(58.5/29.5)	53		
	대 졸	59	(59.6/52.7)	40	(40.4/38.1)	99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공부방(도서관)	29	(74.4/26.1)	10	(25.6/ 9.5)	39	57.387**	6
	야간학교	4	(57.1/ 3.6)	3	(42.9/ 2.9)	7		
	자녀학습지도	46	(76.7/41.4)	14	(23.3/13.3)	60		
	자격증취득기관	20	(24.1/18.0)	63	(75.9/60.0)	83		
	체육 및 오락시설	4	(26.7/ 3.6)	11	(73.3/10.5)	15		
	상담실	7	(87.5/ 6.3)	1	(12.5/ 1.0)	8		
	기 타	1	(25.0/ 0.9)	3	(75.0/ 2.9)	4		
확 대 필요성	그렇다	103	(51.2/92.0)	98	(48.8/94.2)	201	.429	1
	그렇지 않다	9	(60.0/ 8.0)	6	(40.0/ 5.8)	15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3	(12.5/ 2.7)	21	(87.5/20.2)	24	17.298**	4
	불만족한 편이다	19	(54.3/17.0)	16	(45.7/15.4)	35		
	그저 그렇다	53	(55.2/47.3)	43	(44.8/41.3)	96		
	만족한 편이다	34	(60.7/30.4)	22	(39.3/21.2)	56		
	매우 만족한 편이다	3	(60.0/ 2.7)	2	(40.0/ 1.9)	5		
		1순위	2순위	소계	1순위	2순위	소계	총계
확대범위	육성회비	12	40	52	33	19	52	104
	급식비	7	11	52	13	2	15	33
	학용품비	36	12	52	17	4	52	69
	파외비	6	28	52	3	0	52	37
	교과서비	19	7	52	10	4	52	40
	교통비	12	2	52	10	2	52	26
	자격증 취득 훈련비	12	4	52	12	69	81	97

주 : A=행 백분율(%), B=열 백분율(%), ** p < .01

한 것, 교육보호사업의 확대필요성, 확대범위, 만족도 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대상자들이 농촌지역의 대상자들보다 조금 높은 학력을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적인 기술훈련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녀들이 실용적인 자격증 취득훈련을 통하여 취업을 하고 이를 통하여 빈곤을 탈피하려는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교육보호사업은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적인 기술훈련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농촌지역의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수업료나 등록금이 자동으로 면제되고 있으며 성적우수자와 체육특기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진학률은 극히 저조하고 체육특기자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대학에 반드시 진학할 수 있는 학생과 국가대표급 체육특기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조사에도 나타나듯이 자격증 취득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보호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관계성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확대범위, 만족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대학력이나 교육보호사업 확대의 필요성 등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의료보호사업 내용

〈표 8〉은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이 도시지역의 대상자들보다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은 지역에 병원이 없거나 교통의 불편,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농촌지역에 당장 병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면단위마다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데리고 갈

〈표 8〉 의료보호사업 관련내용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 %B)	n=136	(%A/ %B)			
수혜경험	유 무	127 16	(61.7/88.8) (22.2/11.2)	79 56	(38.3/58.5) (77.8/41.5)	206 72	33.204** 1
의료보호 만족도	매우 불만족	3	(11.5/ 2.1)	23	(88.5/17.0)	26	
	불만족	26	(38.8/18.2)	41	(61.2/30.4)	67	
	그저 그렇다	40	(60.6/28.0)	26	(39.4/19.3)	66	28.681** 4
	만족	66	(61.7/46.2)	41	(38.3/30.4)	107	
	매우 만족	8	(66.7/ 5.6)	4	(33.3/ 3.0)	12	
	1순위	2순위	소계	1순위	2순위	소계	총계
못 받는 이유	이용병원 무 치료비 부담스러워	0 13	0 0	0 15	0 1	18 18	18 29
	교통 불편	0	0	0	13	0	13
	데리고 갈 사람 무 및 기타	2	0	0	12	0	14

주 : A=행 백분율 (%), B=열 백분율 (%), ** p < .01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부분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므로 이들과 민간기관의 자원봉사자를 엮어주어 이들이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확인해 주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이동병원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자활보호사업 내용

〈표 9〉는 자활보호사업에 대한 수혜여부, 사용처, 응자금을 받아서 사업한 종류, 사업 이외에 사용한 용도, 응자에 관련된 정보수집 경로, 응자액수 적절성, 상환여부, 상환전망, 자활보호사업 만족도 등을 비교한 것이다. 수혜여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이 비슷하게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자받은 자본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여부는 농촌지역(89.7%)의 대상자들이 도시지역(71.4%)의 대상자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 자활보호사업 관련내용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 %B)	n=136	(%A/ %B)			
여 부	있 다	50	(46.3/35.0)	58	(53.7/42.6)	108	1.734	1
	없 다	93	(54.4/65.0)	78	(45.6/57.4)	171		
사용처	사업에 사용	35	(40.2/71.4)	52	(59.8/89.7)	87	5.806*	1
	사업 이외에 사용	14	(70.0/28.6)	6	(30.0/10.3)	20		
사업종류	포장마차	8	(100./22.9)	0	(0)	8	81.953**	7
	노 점	9	(100./25.7)	0	(0)	9		
	영세식당	8	(100./22.9)	0	(0)	8		
	야채·과일	6	(100./17.1)	0	(0)	6		
	영세중개업	3	(100./ 8.6)	0	(0)	3		
	논, 밭농사	1	(2.3/ 2.9)	42	(97.7/81.4)	43		
	축 산 업	0	(0)	7	(100/13.7)	7		
	특용작물	0	(0)	2	(100/ 3.9)	2		
사업 외 사용용도	생활비	5	(83.3/31.3)	1	(16.7/14.3)	6	10.405	4
	전세 및 월세비	4	(100./25.0)	0	(0)	4		
	자녀학비	2	(50.0/12.5)	2	(50.0/28.6)	4		
	의료비	0	(0)	1	(100./14.3)	1		
	부채상환 및 기타	5	(62.5/31.3)	3	(37.5/42.9)	6		
정보수집 경로	스스로	3	(50.0/ 6.0)	3	(50.0/ 5.2)	6	1.940	4
	가족, 친척	3	(60.0/ 6.0)	2	(40.0/ 3.4)	5		
	사회복지전문요원	31	(46.3/62.0)	36	(53.7/62.1)	67		
	지역주민, 유지	11	(42.3/22.0)	15	(57.7/25.9)	26		
	신문, TV 및 기타	2	(50.0/ 4.0)	2	(50.0/ 3.4)	4		
용자액수 적정성	매우 적당하다	1	(100./ 2.0)	0	(0)	1	8.129	4
	적당하다	2	(25.0/ 4.0)	6	(75.0/10.3)	8		
	보통	23	(59.0/46.0)	16	(41.0/27.6)	39		
	부족하다	24	(42.1/48.0)	33	(57.9/56.9)	57		
	매우 부족하다	0	(0)	3	(100./ 5.2)	3		
상환여부	모두 상환	4	(28.6/ 8.0)	10	(71.4/17.9)	14	2.239	1
	상환중, 상환 못함	46	(50.0/92.0)	46	(50.0/82.1)	92		
상환전망	거의 어려움 없다	0	(0)	6	(100./13.3)	6	7.533	3
	별로 어렵지 않다	7	(43.8/15.2)	9	(56.3/20.0)	16		
	약간 어렵다	25	(58.1/54.3)	18	(41.9/40.0)	43		
	매우 어렵다	14	(53.8/30.4)	12	(46.2/26.7)	26		
자활보호 만족도	매우 불만족	4	(66.7/ 2.9)	2	(33.3/ 1.5)	6	20.381**	4
	불만족	44	(75.9/32.4)	14	(24.1/10.8)	58		
	그저 그렇다	49	(41.2/36.0)	70	(58.8/53.8)	119		
	만족	35	(46.1/25.7)	41	(53.9/31.5)	76		
	매우 만족	4	(57.1/ 2.9)	3	(42.9/ 2.3)	7		

주 : A=행 백분율(%), B=열 백분율(%), * p < .05, ** p < .01

융자를 받아 사업한 종류는 도시지역은 노점, 포장마차, 영세식당, 야채·과일 등 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에서는 대부분 논·밭농사(81.4%)를 경작하는 데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받아 사업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지역에서 14 명, 농촌지역에서 6명으로 조사되었는데,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은 생활비, 부채상환, 전세 및 월세비, 자녀학비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였고, 농촌지역에서는 자녀학비, 생활비, 의료비, 부채상환 등으로 전용하였다. 융자금에 대한 정보는 도시지역의 대 상자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62.0%), 지역주민(22.0%)으로 조사되었고,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62.1%), 지역주민(25.9%)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적절성은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보통이거나 부족한 편이었다 고 응답하고 있다. 상환여부는 대체적으로 상환중이거나 상환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 환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어렵다가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별로 유의 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양 집단간에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자활보호사업에 대한 사업용도에 맞는 사용처, 사업종류, 자활보호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융자금 수혜여부, 사업이외의 사용용도, 융자금 관련 정보수집경로, 융자액수적 정성, 융자금 상환여부, 융자금 상환전망 등에서 유의미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장제보호사업의 내용

<표 10>은 장제보호사업에 대한 수혜여부, 수혜만족도, 보호금액 적절성 등에 대 한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수혜여부에 대한 것은 별 차이 가 없는 것(49.2% : 50.8%)으로 나타났다. 장제보호사업의 만족도는 농촌지역의 대 상자들이 도시지역의 대상자들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금액 적절성에 대한 물음에서도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은 충분하다(50%), 그저 그렇다(36%)고 응답하여 도시지역의 대상자들보다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문화를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농촌지역에서는 경조사가 있을 때 함께 도와주는 관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장례식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표 10〉 장제보호사업 관련내용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 %B)	n=136	(%A/ %B)			
여 부	있 다	32	(49.2/22.4)	33	(50.8/24.6)	65	.195	1
	없 다	111	(52.4/77.6)	101	(47.6/75.4)	212		
수혜자 만족도	매우 불만족	2	(100. / 6.3)	0	(0)	2		
	불만족	23	(71.9/71.9)	9	(28.1/27.3)	32		
	그저 그렇다	6	(42.9/18.8)	8	(57.1/24.2)	14	21.667**	4
	만 족	1	(6.7 / 3.1)	14	(93.3/42.4)	15		
	매우 만족	0	(0)	2	(100. / 6.1)	2		
보호 금액 적절성	매우 충분하다	3	(100. / 2.8)	0	(0)	3		
	충분하다	13	(20.6/12.0)	50	(79.4/50.0)	63		
	그저 그렇다	28	(43.8/25.9)	36	(56.3/36.0)	64	58.551**	4
	부족하다	57	(80.3/52.8)	14	(19.7/14.0)	71		
	매우 부족하다	7	(100. / 6.5)	0	(0)	7		

주 : A=행 백분율(%), B=열 백분율(%), ** p < .01

있다. 반면에 도시지역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데 농촌지역에 비하여 장례식장 임대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장례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 등을 손수 재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제보호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으므로,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를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제보호사업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관계성 비교는 장제보호사업의 수혜여부에 대한 면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장제보호사업의 만족도와 보호금액적절성에서 $p < .01$ 수준에서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

(6) 해산보호사업 내용

〈표 11〉은 해산보호사업에 대한 수혜여부, 만족도, 보호금액적절성 등을 비교한 것이다. 수혜여부에 대한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보호대상자들이 해산보호사업에 대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혜를 받은 사람들 중 만족도는 전

〈표 11〉 해산보호사업 관련내용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N	χ^2	df
	n=143	(%A/ %B)	n=136	(%A/ %B)			
유 무	있 다	17 (60.7/11.9)	11 (39.3/ 8.2)	28	1.031	1	
수혜자 만족도	없 다	126 (50.6/88.1)	123 (49.4/91.8)	249			
	불만족	6 (54.5/35.3)	5 (45.5/45.5)	11			
	그저 그렇다	5 (62.5/29.4)	3 (37.5/27.3)	8	4.408	3	
	만 족	4 (66.7/23.5)	2 (33.3/18.2)	6			
보호금액 적 절 성	매우 만족	2 (66.7/11.8)	1 (33.3/ 9.0)	3			
	매우 충분하다	4 (100. / 3.2)	0 (0)	4			
	충분하다	23 (30.3/18.4)	53 (69.7/43.8)	76			
	그저 그렇다	48 (56.5/38.4)	37 (43.5/30.6)	85	22.865**	4	
	부족하다	48 (60.8/38.4)	31 (39.2/25.6)	79			
	매우 부족하다	2 (100. / 1.6)	0 (0)	2			

주 : A=행 백분율(%), B=열 백분율(%), ** p < .01

체적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금액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이 도시지역의 대상자들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해산보호사업은 일반적으로 수혜율이 극히 적은 사업이다. 가임여성이 있다는 것은 젊은 노동력이 있다는 반증이고, 젊은 노동력이 있다면 보호대상자에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풀이된다.

앞으로 생계보호사업을 공공부조사업의 주요한 6대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수혜의 빈도가 지극히 적으로 이를 의료보호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7) 공공부조사업 관련 변수비교

〈표 12〉는 공공부조사업내용과 관련된 변인들을 등간화하여 그 평균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생업자금 융자액의 적절성, 장제보호사업의 적절성, 해산보호사업의 적절성, 생계비 증액정도, 융자금 상환전망, 자녀교육기대치 등을 비교하였다.

생업자금융자액 적절성의 평균은 도시지역의 대상자(2.60)들의 농촌지역의 대상자들(2.43)에 비하여 조금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장제보호액수의 적

〈표 12〉 공공부조사업 관련변수 비교

구 분		N	Mean	S. D	t
생업자금 융자액 적절성	도 시	50	2.60	.67	1.224
	농 촌	58	2.43	.75	
장제보호액수 적절성	도 시	108	2.52	.89	-7.462**
	농 촌	100	3.36	.72	
해산보호액수 적절성	도 시	125	2.83	.86	-3.272**
	농 촌	121	3.18	.82	
생계비증액 정 도	도 시	121	4.56	1.44	7.904**
	농 촌	74	2.85	1.51	
생업융자자금 상환전망	도 시	46	2.85	.67	-1.994
	농 촌	45	3.20	.99	
자녀교육 기대치	도 시	112	4.25	.86	1.663
	농 촌	105	4.06	.84	

주 : ** p < .01

절성에 대한 평균은 농촌지역(3.36)이 도시지역(2.52)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해산보호액수의 적절성은 농촌지역(3.18)이 도시지역(2.8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이것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생계비 증액정도는 도시지역의 대상자(4.56)들이 농촌지역 대상자들보다(2.85) 보다 월등히 높게 요구하고 있었다. 생업자금 융자상환전망은 농촌지역의 대상자들(3.20)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자녀교육의 기대치는 도시나 농촌 모두 높은 기대치(도시 4.25, 농촌 4.06)를 보였으나 도시가 농촌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생업자금 융자액의 적절성, 생업자금융자금 상환전망, 자녀교육기대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제보호액수의 적절성, 생계비 증액정도, 해산보호액수의 적절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교차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8) 공공부조사업의 만족도 비교

생계보호사업 만족도는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3.36)이 도시지역의 대상자(2.9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보호사업은 도시지역의 대상자들(3.13)

〈표 13〉 공공부조사업 만족도 비교

구 분		N	Mean	S. D	t
생계보호사업 만족도	도 시	143	2.96	.94	-3.903**
	농 촌	136	3.36	.77	
교육보호사업 만족도	도 시	112	3.13	.82	3.363**
	농 촌	104	2.69	1.08	
의료보호사업 만족도	도 시	143	3.35	.91	5.029**
	농 촌	135	2.72	1.16	
자활보호사업 만족도	도 시	136	2.93	.90	-2.878**
	농 촌	130	3.22	.73	
장제보호사업 만족도	도 시	32	2.19	.59	-5.568**
	농 촌	33	3.27	.94	
해산보호사업 만족도	도 시	17	3.00	1.18	.318
	농 촌	11	2.88	.78	

주 : ** p < .01

이 농촌지역의 대상자(2.69)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있다. 의료보호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의 대상자(3.35)들의 만족도가 농촌지역의 대상자(2.72)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있다. 자활보호사업은 농촌지역의 대상자(3.22)들이 도시지역의 대상자들(2.9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산보호사업은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이 높게 나타났고 장제보호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산보호사업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과 도시지역의 보호대상자들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함의

위의 조사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 공공부조사업의 차별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을 6가지 주요한 공공부조사업으로 구별하여 결론을 내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교육보호사업은 전문적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적 직

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실용적인 교육을 통한 취업 후 자활이라 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성적 우수자나 체육특기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는데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국가대표급의 체육특기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정으로는 농업기술배양, 축산기술, 특용작물재배나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의 의료보호사업은 면단위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보건소의 확대 및 정기적인 이동병원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단기간에 병원기관을 설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면단위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보건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이동병원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노인대상자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민간(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이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에 병원 등 의료기관 건립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농촌지역의 자활보호사업은 농촌지도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자활보호사업은 융자금을 받아 어떠한 사업을 펼치느냐에 중요한 성패가 달려 있다. <표 9>에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농촌지역 보호대상자들이 아직도 논이나 밭의 경작을 위하여 융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아직까지 보호대상자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융자금을 받아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 양봉, 비닐하우스, 인삼 등 지역의 특산품들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농촌지도소 등 관련기관들과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특별히 농촌지역은 우울, 불안, 외로움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 이웃들이 서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지역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므로 공동사업을 구상하여 실시하는 것도 자활을 위한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농촌지역의 장제보호사업은 보호비를 축소하여 이동병원의 운영이나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확인하여 주는 자원봉사자관리비에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10>과 같이 농촌지역의 보호대상자들은 장제보호사업의 만족도가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에 비하여 높고 보호금액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장제보호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보호금액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에서는 장례식장 임대에서부터 지출비용이 농촌지역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은 장례에 필 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손수 재배하여 비용이 적게 소비되고, 원만한 이웃관계를 기초로 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품앗이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일률적으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제공되는 장제비의 비용을 축소하고 이 비용을 이동병원의 운영이나 노인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자원봉사자의 관리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해산보호사업은 의료보호사업과 통합이 필요하다.

해산보호사업은 <표 11>에 나타나 있듯이 그 수혜대상자가 10%에 못 미치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임여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노동이 가능한 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는 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산보호사업은 6가지 주요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의료보호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농촌지역의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차별적 시행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시범적인 실시를 통하여 이를 평가하고, 검증을 통한 확대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 공공부조사업의 효과성을 위하여 차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으로 시범적인 실시를 통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같은 종류의 휘발유라도 농촌지역의 농기구에 소비되는 기름은 도시지역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1/3로 차별적인 판매를 하고 있다. 공공부조사업의 차별적 시행도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실천의지

만 가지고 있다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공공부조사업을 도시지역과 차별적으로 시행할 때 농촌지역에서 공공부조사업의 근본 목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책임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그에 따르는 욕구표출방식의 변화가 예상되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더 무게를 더해 갈 것이다. 또한 민간부분의 참여와 조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그들의 지역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기존의 공공부조사업을 법의 목적, 용어상의 변화, 급여의 기본원칙, 범위, 자산조사, 기초생활보장기준 등 주로 형식적인 면에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별 대상자들의 욕구와 그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을 바탕으로 한 차별적 시행의 반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주거급여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급여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주거급여가 임차료를 중심으로 제공된다면 도시지역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어 지원받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가를 소유한 상태이므로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들에게 주거비는 도시지역에 비해 적게 들지만 집을 유지하거나 주거하는 곳의 기본적인 문화용품 면에서 도시지역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농촌지역의 대상자들에게도 적절한 배분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급여의 내용면에서 지역적인 차별성의 반영을 시도한 것인데, 앞으로 대상자의 선정이나 절차, 전달체계 등에서도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되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하에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공공부조사업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 강혜규. 1997.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호. 보건사회연구원. pp. 69~75.
- 권영학. 1991. “빈곤선 설정을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원. 1996. “농촌주민의 사회적 욕구수준과 지역복지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곤. 1997.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6~66.
- 김영모. 1992.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pp. 7~10.
- 김용일 외 역. 1996. 《사회사업방법론 : 통합적 접근》. 보진재. 1996. pp. 34~35.
- 김의균. 1995. “한·일 빈민정책의 전개과정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철·정영일. 1977. “한국 영세농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 《사회과학연구보고》 제8권. 서울대출판부. pp. 25~27.
- 김재홍. 1988. “농촌빈곤층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21세기 농정발전방향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II》. 농촌경제연구원. pp. 23~26.
- 김현숙. 1990.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사회복지논문집》 제13호. pp. 23~35.
- 남세진·조홍식. 1994. “도시농촌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과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4호. pp. 84~88.
- 민경삼. 1996.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빈곤정책 방향.” 《사회복지》 통권 제130호(가을호). 한국사회복협의회. pp. 137~138.
- 박경숙. 1995. “도시와 농촌사회복지전문요원의 생활보호업무수행비교.” 《한국사회복지논집》 제4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p. 69~96.
- 박찬용. 1997.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간 차등화의 타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24.
- 이용교. 1990. “일선행정기관 사회복지담당자의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16호. pp. 177~193.
- 윤종대. 1992. “도시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미·김근식. 1991.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이성기 외. 1995.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일차 년도 운영평가》. 보건사회연구원. pp. 101~199.

- 이은진. 1981. “농촌에서의 빈곤.” 《농촌경제》 제4권 제3호. 농촌경제연구원. pp. 34~37.
- 이필도. 1993. “농촌빈곤선의 계측과 빈곤화 요인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덕규. 1997.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paradigm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3권 제3호. p. 301.
- 정명채 외. 1989. 《영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 농촌경제연구원. pp. 56~57.
- Coulton, C. J. & J. Chow. 1995. “Poverty.”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 C. : NASW Press. pp. 2113~2115.
- Edwards, J. 1981. “Subjectivist Approach to the Study of Social Policy Making.”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0. July.
- Elkin, R. 1985. “Paying the Piper and Calling the Tune: Accountability in the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 9(2). pp. 12~13.
- Forder, A. 1984. “Explanation of Poverty.” in A. Forder, T. Caslin, G. Ponton, S. Walklate (eds.). *Theories of Welfa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p. 203~204.
- George, V. & J. Wilding. 1984. *Impact of Social Polic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 40.
- Gilbert, N. & H. Specht. 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entice-Hall.
- Parkinson, J. R. 1983. *Poverty and Aid*. New York: Basil Blackwell. pp. 56~59.
- Piachaund, D. 1987. “Problem in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pp. 147~164.
- Pincus, A., & A. Minahan. 1973. *Social Work Practice: Model and Method*. Illinois Itasca: F. E. Peacock Publishers. pp. 15~19.
- Rein, M. 1970. “Problems in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Poverty.” in P. Townsend (ed.). *The Concept of Poverty*.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p. 48.
- Romanishyn, J. M. 1971.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 New York: Random House. pp. 5~10.
- Rowntree, B. S. 1901. *Poverty and Progress: A Second Social Survey of York*. London: Macmillan, pp. 101~102.
- Rowntree, B. S. 1922.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p. 86.
- Sullivan, T. J. et al. 1980. *Social Problems: Divergent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p. 376~377.

- Titmuss, R. 1965. *Poverty vs Inequality: Diagnosis*. The Nation, Vol. 200(6). February.
pp. 130~133.
- Townsend, P. 1975. *Sociology & Social Policy*. London: Middleses. pp. 268~269.
- Wilber, G. L. 1975. *Poverty: A new Perspective*.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Wilensky, H. L.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 Study on Differentiate Performance of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Rural Community

Kim, In

(Dept. of Social Welfare, Chodang University)

Today,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Korea is provided mainly for the livelihood protection beneficiary in urban area. The fact that the urban community-centered program is also applied to the livelihood protection beneficiary in rural area brings about some problems in fitness and effective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The purpose of my study is to present my opinion that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for the rural community should be put in practice after being fully distinguished from the urban program for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limited social welfare resources to insure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seek the self-support contribu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The subject for this study were livelihood protection beneficiaries living in both rural and urban area. And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this parts: first, the way of life in them, second, the contents of 6 main public assistance programs being carried out.

Total number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beneficiaries are 279 case: 143 case from 15 Dong in 5 cities, and 136 case from 15 Myun in 5 counties. And the social worker who are performing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are consisted of 50 case: 25 case from 5 Dong in 5 cities, and 25 case from 5 Myun in 5 counties.

This research reach the result that the differentiate performance o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rural community would be an effective device for self-support to be freed from the vicious circle of poverty.